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부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총액인건비팀 명칭 변경 및 운영 팀 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디지털소통팀장”을 “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으로,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소통팀장”을 “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및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 각 1명”을 “사회정책총괄담당관”으로,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3. 주요 사회지표 분석 · 개발

14. 사회동향 및 사회정책 성과의 조사 · 분석

15. 사회관계 부처 정책동향의 분석 및 제언에 관한 사항

16. 사회정책 관련 인식 · 실태조사 및 분석

17. 사회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 지원

18. 사회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 추진

제3조의3제3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7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8명”을 “29명”으로, “4급 1명,”을 “4급 2명,”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 다음에 “장학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5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 2”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6”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 2”를 삭제하며,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7”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7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9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94 다음에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식품위생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4”를 신설한다.

별표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7”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94”를 삭제하고,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

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4”를 삭제하며, 운전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2”를 삭제하며,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식품위생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2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식품위생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21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22”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식품위생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21”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를 삭제한다.

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디지털소통팀 및 사회정책조사분석팀은 각각”을 “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이 사회정책협력관”

을 “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이 대변인”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을 “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이 보좌하는”으로, “홍보담당관이,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이 각각”을 “홍보담당관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생 략)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u>디지털소통팀장</u>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u>장학관</u> 으로, <u>디지털소통팀장</u> 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u> 또는 <u>방송통신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u>디지털소통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 7. (생 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u>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u> ----- -- <u>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u> 은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u> 또는 <u>사서사무관</u> -----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u> ----- -----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 략) ⑥ <u>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u> 및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은 <u>부이사관·서기관</u>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부이사관·과학기술</u>

· 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 (생략)

②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및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 각 1명을 두되,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서기관·서기관 -----

-----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회정
책총괄담당관-----
----- 부이사관·과
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보
한다.

③ -----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사회지표 분석·개발

2. 삭제

3. 삭제

4. 사회동향 및 사회정책 성과의 조사·분석

5. 사회관계 부처 정책동향의 분석 및 제언에 관한 사항

6. 사회정책 관련 인식·실태조사 및 분석

-----.

1. ~ 12. (현행과 같음)

13. 주요 사회지표 분석·개발

14. 사회동향 및 사회정책 성과의 조사·분석

15. 사회관계 부처 정책동향의 분석 및 제언에 관한 사항

16. 사회정책 관련 인식·실태조사 및 분석

17. 사회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 지원

18. 사회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 추진

<삭제>

<u>7. 사회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 기관 운영 지원</u> <u>8. 사회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 소통 활성화 추진</u> 제3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 ② (생 략) ③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 관 · 기술서기관</u> 또는 장학관으 로 보한다. ④ ~ ⑥ (생 략) 제4조(감사관) ① · ② (생 략) ③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 관 · 기술서기관</u> 또는 장학관으 로 보한다. ④ ~ ⑥ (생 략)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은 <u>부이사관 · 서기관</u> 또는 기술 <u>서기관</u>으로 보한다. 제6조(인재정책실) ① ~ ⑥ (생 략) ⑦ 각 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u> <u>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⑧ ~ ⑯ (생 략)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① ~ ⑥ (생 략)	제3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부이사관 · 과학 기술서기관 · 서기관</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관)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 <u>부이사관 · 과학 기술서기관 · 서기관</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지원과)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서기관</u>----. 제6조(인재정책실)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 <u>부이사관 · 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u>-----. ⑧ ~ ⑯ (현행과 같음)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⑦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u> ----- -----.
⑧ ~ ⑱ (생략)	⑧ ~ ⑱ (현행과 같음)
제8조(대학규제혁신국) ①·② (생략)	제8조(대학규제혁신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u>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자치협력안전국) ①·② (생략)	제9조(교육자치협력안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u>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u>28명</u> (3급 또는 4급 1명, <u>4급 1명</u>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② ----- ----- ----- ----- ----- ----- <u>29명</u> ----- ----- <u>4급 2명</u> , ----- -----

5급 15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다.

③ (생 략)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39조에서 “실·국장급 3
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사회정
책협력관, 감사관 및 국사편찬
위원회 편사부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학생
건강정책과장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보할 수 있다.

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 및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학부모디지털소통

<u>사회정책조사분석팀은 각각 2024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이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u>	<u>지원팀은</u> ----- -----. ② ----- <u>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이 대변인</u>----- ----- ----- ----- -- <u>학부모디지털소통지원팀장이 보좌하는</u> ----- ---- <u>홍보담당관이</u> ----- ----- -----.
---	---

신·구정원대비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장학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u>1</u>	+1
장학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u>	<삭 제>	-1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u>16</u>	+1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u>31</u>	+31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	<신 설>	<u>2</u>	+2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6</u>	<삭 제>	-1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1</u>	<삭 제>	-31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	<u>2</u>	<삭 제>	-2

<u>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 무관, 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기상사무관, 보건사 무관, 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 전 산 사 무 관, 방 송 통 신 사 무 관 · 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u>	<u><신 설></u>	<u>47</u>	+47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1</u>	+1
<u>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농업사 무관, 임업사무관, 기상사무관, 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 항공사 무관, 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 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통계사무관, 사서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u>	<u><신 설></u>	<u>194</u>	+194

<u>행정주사, 공업주사, 농업주사, 임업주사, 기상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환경주사, 항공주사, 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통계주사, 사서주사 또는 편사연구사</u>	<u><신 설></u>	<u>134</u>	+134
<u>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통계사무관, 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기상사무관, 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47</u>	<u><삭 제></u>	-47
<u>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통계사무관, 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기상사무관, 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u>	<u>194</u>	<u><삭 제></u>	-194

<u>행정주사, 통계주사, 사서주사, 공업주사, 농업주사, 임업주사, 기상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환경주사, 항공주사, 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u> ,	134	<삭 제>	-134
<u>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시설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	<신 설>	42	+42
<u>행정주사보, 사서주사보, 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시설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	42	<삭 제>	-42
<u>행정서기, 공업서기, 보건서기, 식품위생서기, 시설서기, 방재안전서기,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u> ,	<신 설>	21	+21

<u>행정서기보, 공업서기보, 보건서기보, 식품위생서기보, 시설서기보, 방재안전서기보, 전산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u>	<u><신 설></u>	<u>22</u>	+22
<u>행정서기, 사서서기, 공업서기, 보건서기, 식품위생서기, 시설서기, 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u>	<u>21</u>	<u><삭 제></u>	-21
<u>행정서기보, 사서서기보, 공업서기보, 보건서기보, 식품위생서기보, 시설서기보,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22</u>	<u><삭 제></u>	-22
,	,	,	
,	,	,	